



제 주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검진 관련 주요안내

1. 평소 지역사회 및 도민의 감염병 예방에 귀 기관(시설)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2. 관련: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(결핵검진 등), 제11조의2(준수사항), 제34조(과태료), 같은법 시행령 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및 시행규칙 제4조(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)
3. 결핵검진 등 검진의무기관의 기관장·학교장은 종사자·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하며,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**2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·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4. **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** 등을 아래와 같이 **안내**하오니 기관(시설) 종사자·직원 중 미검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.

구분		결핵검진	잠복결핵감염검진	
검사목적		활동성 결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	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	
검사방법		임상적, 방사선학적(예시. 흉부X-선검사) 또는 조직학적 검사, 가래(喀痰)의 결핵균 검사	면역학적 검사* *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(IGRA검사),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(TST검사)	
검사주기	기존종사자	연간 1회(매년 1.1.~12.31. 중 1회)	'22.7.1. 기준 이전 채용자	'23. 9. 30.까지 검진 완료
	신규채용자 및 복직자	채용일·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	이후 채용자	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
			채용일·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(미검진자만 해당)	

※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다른 검사로 각각 검진 받아야함.

※ 자세한 사항은 (붙임1)결핵예방법 제11조(결핵검진등) 의무 이행 관련 안내서(질병관리청) [동부보건소홈페이지>새소식](#)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 바람.

붙임 결핵예방법 제11조(결핵검진등) 의무 이행 관련 안내서(질병관리청) 1부(별도게시). 끝.

제 주 시



수신자 관내 결핵검진등 의무기관장

주무관 성미사 감염병 관리팀 장 김용남 동부보건소장 전결 2024. 11. 28. 현은희

협조자

시행 동부보건소-23217 (2024. 11. 28.) 접수

우 633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4길 6, 제주동부보건소 / <http://www.jejudo.go.kr>

전화번호 064-728-4205 팩스번호 064-728-4209 / mms114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